

# 개정 지하수법과 지하수 정책 방향

류 영 창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I 수자원으로로서 지하수의 위치

## 1. 수자원 이용현황

현대사회에서 물은 소중한 자원으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물의 공급·유지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적 책무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에 의해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수자원 확보는 21세기 물부족의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에 있다.

수자원 정책방향의 지표가 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현황을 보더라도 수자원확보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 이는 세계평균의 1.3배로서 적지 않으나 1인당 강수량은 2,900m<sup>3</sup>로 세계평균 26,800m<sup>3</sup>의 11%에 불과하여 수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실정이며 강우가 지역적·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하천의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한 관계로 지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자원총량은 1,267억톤으로 이중 76%인 966억톤이 증발산되거나 바다로 유실되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301억톤을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75억톤을 하천수와 댐수로 확보하고 26억톤을 지하수로 충당한다.

이러한 지하수 이용량은 수자원 총량의 2%에 해당하고 용수총이용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 용수의 19~20%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하수 대수층의 발달이 외국에 비하여 빈약해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1년에 우리나라 용수수요는 367억톤으로 예상되며 댐건설 확대등으로

용수공급량도 398억톤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수자원이용율은 29%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하수 역시 29억톤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이나 그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각국의 지하수 이용현황

<표1> (단위 : 억m<sup>3</sup>)

국 명	수자원총량	용수이용량(A)	지하수이용량(B)	비율(%) B/A
일 본	6,600	1,000	200	20
대 만	990	191	42	22
미 국	63,980	6,205	1,241	20
프랑스	4,400	370	70	19
한 국	1,267	301	26	9

## 2. 지하수개발·이용실태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지형적 특성상 주로 한강,낙동강,금강등 5대강유역을 중심으로 부존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가능한 지하수의 양은 연간 약 133억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가능 규모는 현재 댐을 건설하여 이용하는 댐용수 103억톤보다 많아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지표수를 보완하는 대체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가능량

<표2>

구 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섬진강	영산강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면적(천km <sup>2</sup> )	99	23	24	10	5	3	16	7	9	2
강수량 (mm)	1,274	1,286	1,166	1,269	1,414	1,319	1,279	1,506	1,182	1,872
개발가능량 (억m <sup>3</sup> /년)	132.6	35.5	28.3	15.5	5.5	3.3	18.8	9.2	10.3	6.2

우리나라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76만 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80년대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와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시설의 증가는 댐시설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시설이 산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들 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새로운 행정수요로 등장하고 있다.

	'70년이전	'80	'90	'95
시설수(천개소)	74	168	567	764
이용량(천만톤/년)	23	44	153	262

주)지하수조사연보(1996), 수치는 연도말 누계치임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용도를 보면 51%인 년13억톤이 생활용수이고 39%인 10억톤이 농업용수로 이용되며 나머지가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지하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국민의 일상생활용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하수의 특성상 공업용보다는 소규모의 생활용이나 농업용으로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 II. 지하수 개발·이용의 문제점

정부에 의해 개발되는 지표수자원과는 달리 지하수는 주로 사적목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개발·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국지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예를들면 충북 초정리 일원의 생수개발로 인한 인근지역 우물이 마르는가 하면 부곡온천의 지하수위가 낮아지는등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지하수개발의 중요한 문제는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지하수개발에 실패하거나 이용을 종료하고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들이 오염원이 되어 주변지하수에까지 오염을 유발하여 “오염의 고속도로”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러 방치된 폐공처리와 함께 개발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폐공은 17,0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수문제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지하수개발에 관한 규정이 수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점이다. 지하수관련 법령은 온천법, 먹는물관리법등 10여개 법령이 있으며 각기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개발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적절히 규제하고 보전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어느시대에서도 규제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 Ⅲ 개정 지하수법의 정신과 내용

#### 1. 지하수법의 정신

지하수를 포함한 물의 문제는 세계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있다. 「20세기 국제간 분쟁의 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의 그것은 물이 될 것」이라는 세계물정책연구소의 샌드러 포스텔 소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물은 이미 인류사회에서 고가의 자원으로써 위치하고 있다.

지하수라고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하수는 지표수자원을 보완하는 보충적 수원 또는 대체수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자원은 지표수자원과 마찬가지로 개념자체에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고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공공성은 더욱더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지하수에 대하여 저마다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두고 있고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공공성에 바탕을 둔 지하수에 대한 규제경향은 크게 공개념(公概念)과 공수개념(公水概念)적 규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개념은 지하수의 특성상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서 입장을 달리하는데 공개념은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보고 그 개발·이용에 공적규제를 가하는 입장이고, 공수개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하수를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후자를 취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이 있고, 전자의 경우는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법에서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지하수를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지하수법 등을 통해 공적규제를 하는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 공개념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제3조)하여 지하수의 공개념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법의 입법목적 또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지하수정책의 기본구조는 지하수의 부존특성과 개발가능량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전하고 관리해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은 개발·이용이라는 국민의 사적행위의 보호 및 통제와 보전·관리라는 공적행위의 두가지 상반된 측면을 제도화하여 보호와 규제를 주된 수단으로 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개정 지하수법의 주요내용

개정 지하수법은 위와 같은 정책실현을 위해 그동안 지하수관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입법화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지하수에 대한 용어의 재정의

종전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이라고 규정하여 용천수도 포함되는 의미이나, 용천수등이 제외된다는 의견도 있어 “흐르는 물”을 추가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지하수법상 지하수는 온천수, 먹는샘물(광천음료수)등을 포함하여 지표하에 존재하는 물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 지하수법의 적용범위 조정

지하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법을 적용토록 애매하게 규정하여 법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여 금번 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오염방지, 원상복구, 예치금 규정은 지하수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지하수에 관한 막연한 규정만이 있는 경우는 당해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수법을 적용토록 강화한 것이며 특히, 지하수보전·

관리규정중 핵심이 되는 오염방지, 원상복구, 예치금 규정은 타법에 규정이 있어도 지하수법을 적용토록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지하수법은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오염방지, 원상복구, 예치금 규정은 다른 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지하수 조사체계의 확립

종전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기초조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하수 개발·이용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실시함에 따라 지하수 조사기관의 분리로 인한 중복조사와 국가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지하수조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또는 통보 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중복조사를 피하고 조사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지하수 조사결과 얻어진 정책대안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하면서 법정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화 하게 된다.

### 4)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제 도입

법 제정당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제를 도입하였으나 신고제로서는 지하수 과다 개발에 따른 주변 지하수의 고갈이나 지반침하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분쟁 초래에 대한 대책 강구가 곤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에 대하여는 허가제

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농림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거나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는 100톤을 초과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제한 및 취소근거를 정하여 규제를 강화 하였다.

- 지하수고갈,지반침하 또는 지하수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제한 또는 취수량 제한이 가능하고 지하수 개발후 실패한 경우등은 허가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허가제 도입과 관련, 다음 경우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에는 현행대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 국방·군사시설로 지하수 개발·이용
- 농림어업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의 지하수 개발·이용
- 일반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의 지하수 개발·이용
- 재해 기타 천재·지변, 비상사태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한편, 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도를 작성·제시토록 하여 이용토록 함으로써 설치도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 나. 지하수 영향조사제 도입

허가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인 경우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을 통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하수개발이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지하수보전·관리를 강화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영향조사방법·항목 등을 정하였으며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영향조사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영향조사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 다. 착공·준공 신고제 도입

지하수 개발과정에 대한 감시 및 준공확인 규정의 미비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없어 결국 오염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준공한 때에도 신고하도록 해 시·도지사의 준공확인을 받고 이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개발착수에서 준공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라. 시정·폐쇄명령절차 보완

종전 지하수법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규정치 않아 명령의 실효성이 적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정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염방지 조치,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계속하여 3월이상 지하수 개발·이용하지 않는 경우
-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 경우등

##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 가. 지정요건 보완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격상하여 법에 규정하였다.

### 나. 지정 절차보완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다.

#### 다. 행위제한 규정 보완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는 일정한 행위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제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번 개정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는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이용기간도 5년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원상복구 의무화 및 이행보증금 예치

#### 가. 원상복구의 의무화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비로써 법적인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여 복구명령 이전에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지하수관리에 지장이 많았으나, 금번 법개정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스스로 원상복구할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원상복구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는 처벌토록 강화하였다.

#### 나.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금까지는 원상복구의 미이행에 따른 대체 복구수단이 없어 폐공이 발생되어도 조치할 방법이 없었으나, 금번 법개정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시·도지사가 원상복구 미이행시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대행함으로써 철

제한 지하수관리를 도모하게 하였다. 이행보증금은 굴착공사비의 10%로서 착공신고시 현금이나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준공확인후 3년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필요시는 계속해서 예치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치된 보증금은 개발자가 원상복구할 경우는 반환하게 된다.

#### 7) 수질검사의무 완화

종전에는 지하수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년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이로인한 행정력낭비도 매우 컸다. 그래서 금번 법개정시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등 수질이 지하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받더라도 용도별로 검사주기를 달리하였는 바, 농업용수는 3년, 공업용수는 2년, 기타 일반용수는 1년으로 조정하였다

#### 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 도입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을 사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없어 특정의 면허업체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므로서 무질서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전문화와 책임시공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의 기술인력·자본금·시설능력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케해 '98.1.1부터는 등록업체만이 지하수개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업체를 통제하는 규정을 두어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도록 하였다.

※ 전국의 지하수개발업체는 약 3,000여개(보령그라운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700개 포함)으로 추계되고 있음.

#### 9)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지하수영향조사는 업무의 성격상 사적 영리추구라기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정의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위할수 있도록 하였다.

## IV 지하수정책의 방향

지하수정책의 기본방향은 지하수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하수의 지속적인 조사·관측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차원에서 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둘째, 이러한 지하수자원을 오염되지 않게 보전·관리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이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향은 정부 스스로의 투자가 요구되는 조성 또는 촉진적 정책이 요구되며, 두 번째·세 번째 방향은 규제 또는 규제완화(Delegation)와 같은 규제적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지하수정책의 근간으로서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시대에 따라 정책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일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의 입장에서 지하수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지하수 조사·관측의 지속

첫째, 지하수 조사·관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추조사, 물리탐사등 기초조사를 통해 지하수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등을 추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2011년까지 전국의 90개 시·군 총45.7천km<sup>2</sup>에 대한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함양지역이나 고갈이 우려되는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하여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까지 전국에 310개소의 광역관측소를 설치하며, 보조

관측소도 2011년까지 시·군·구별로 약 30~40개소씩 총 10,000여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지표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17개시·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 조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98년부터 운영하고 매년 지하수조사연보도 발행해 지하수정책의 질을 높이고 정부·국민간 자료의 공유화의 효과도 높힐 계획이다.

## 2. 지하수 보전·관리 강화

첫째, 지하수 조사·관측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으로 현재 2011년을 목표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둘째, 지하수보전에 지장이 되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지하수함양이 요구되거나 오염우려지역 등을 보전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보전구역 지정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 3.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

지하수공개념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지하수개발·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공적규제를 계속할 계획이다. 금번 법개정을 통해 허가제나 지하수영향조사제 도입등 규제를 강화 했지만 향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 V 결 어

지하수는 지표수자원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수자원이라고 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수자원정책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즉, 정책의 핵심에 놓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또한, 지하수는 사적소유물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파서 뽑아 쓸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즉, 우리 모두의 편익을 위해 기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하수법이 지향하는 지하수의 공개념 역시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하수 보전·관리와 개발·이용의 적절한 규제를 통한 지하수자원의 공개념 실현이라는 기본정책방향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금번 지하수법이 전면개정되었다. 개정 지하수법은 특히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입법화하였다. 즉 환경친화적 지하수개발을 지향했다고 볼수 있다. 그 만큼 지하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기 쉽고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규제강화가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하수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한편에서는 국민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지하수가 우리 모두의 편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하수개발을 통제하고 지하수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수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하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보전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